

9.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22년 11월 18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교육감
-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22일
- 상정일자 : 제2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
제4차 교육위원회(2022년 12월 5일)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주진욱)

□ 제안이유

- 동 조례는 1991년 3월 제정·시행하여 총 8차례 일부 개정을 거쳐 운영하였으나, 그 외 조항에서 운영상 미비점이 나타남에 따라 상위 법령과 기준을 통일하고,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물품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물품의 종류와 상태 구분 및 정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, 안 제5조)

- 물품 분류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물품의 회계연도 및 물품관리 표준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, 안 제8조)
- 물품구입 및 기부물품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, 안 제10조)
- 물품 가격의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)
- 물품의 보관 책임, 물품의 일시보관, 물품의 분실·훼손 시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 ~ 안 제14조)
- 물품의 불용 결정 및 소요조회, 불용품의 매각과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5조 ~ 안 제17조)
- 물품관리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8조)
- 물품관리사무의 취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사항에 대해 국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을 규정함(안 제19조)

3. 검토보고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노인만)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, 물품 관리 운영의 전산화 등 환경 변화의 반영, 용어 정비 및 조례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·정비하여 물품관리 등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·보완하고자 함
- 각 조문별 주요 내용 및 검토결과
 - ▶ 본 개정조례안은 19개 조문과 2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 - ▶ 제명을 「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」에서 「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물품 관리 조례」로 변경함

- 상위법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과 동일한 문장구조로 변경하여 관계법령 간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음
- ▶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,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음
- ▶ 안 제3조에서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 중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해당 기관에 위임하고, 이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
 - 물품관리사무의 위임 사항은 내부의 권한 관계의 규정이라는 점에서 조례가 아닌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위임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조례의 적합성을 높이는 조치로 파악됨
 - 또한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불필요하게 중복규정한 것을 삭제함으로써 법령 상하간의 위계체계를 분명히 하고자 한점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
- ▶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물품의 종류(소모품과 비소모품)와 구분기준, 물품의 상태분류기준 및 정리기준 등을 규정하였음
 - 기준을 규정함에 있어 쉬운 용어로 순화하여 조례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, 상위법령과 기준을 통일하여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
 - 다만, 비소모품 취득단가를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소모품 취득단가 3만원 기준을 삭제한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 「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」과 교육부의 학교회계제도 개선 권고 및 물가 상승 등 경제적 요인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, 이러한 취득단가 상향에 따라 소모품으로 분류되는 물품 범위가 커지는 등 물품 관리에 미칠

영향에 대한 세심한 검토 및 예방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- ▶ 안 제6조에서 물품관리관이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 이를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함을 규정하였음
 - 물품관리관, 물품출납공무원, 재물조사 등의 상위법령을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없음
- ▶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물품의 회계연도 및 물품 관리에 필요한 표준서식을 규정하였음
 - 조례 제정 당시 수기로 물품 대장을 관리하였으나 현재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물품 대장 등을 관리하고 있어 이러한 업무환경 변화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
- ▶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물품을 구입·수리·제조 시 문서로 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, 기부물품 취득의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였음
 - 현행 조례를 보다 쉬운 문장으로 순화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재규정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명확한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
 - 또한, 일상경비로 취득한 물품의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바, 적정한 물품 관리를 위해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됨

- ▶ **안 제11조에서 안 제8조에 따른 표준서식에 기재해야 할 물품의 가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**
 - 「물품관리법 시행령」에 규정된 물품의 가격 기재 사항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나, 구입 물품·제작물·기부물품 등 취득하는 물품 종류가 다양한 만큼 취득가격의 기준도 이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됨
- ▶ **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 물품을 보관상 재고품·공용품·전용품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보관 책임자를 명시하고 있으며, 일시보관 및 물품의 분실·훼손을 인지하였을 시 보고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음**
 - 물품 보관에 관한 현행 조례의 통합개정으로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신뢰성을 높이고, 물품 보관의 책임과 분실·훼손 시 보고 체계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없음
 - 다만, 물품 보관 및 분실·훼손 시 업무 절차·관련 서식 등 세부적인 처리 과정에 대해 규칙 등으로 정하여 실효성 있는 물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
- ▶ **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 불용결정 및 소요조회와 관련된 사항과 불용품의 매각·폐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**
 -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, 불용품의 매각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예정가격 관련

사항이 신설되었기에 현행 조례 상 매각가격 결정 부분을 삭제한 것은 타당함

- ▶ 안 제18조부터 안 제19조에서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서 정한 물품관리 검사에 관한 사항과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 국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음

○ 종합 검토 결과

- ▶ 본 전부개정조례안은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반영 및 상위법령과 중복 규정 조항의 삭제, 물품 관리 업무 전산화 등 업무 환경 변화의 반영, 용어 순화 및 조항 삭제와 통합을 통한 불필요한 조항 정비 등 전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
- ▶ 다만,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비소모품 취득단가 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소모품 처리 증가 등 물품 관리의 우려가 예상되는바, 보다 실제적인 물품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및 관리·감독 강화 등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·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
- ▶ 또한,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물품관리사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·서식 등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칙 등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물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<p>비소모품 취득단가 기준을 상향(5만원→50만원) 조정한 기준이나 근거는?</p>	<p>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」 및 교육부의 개선 권고,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한 것이며,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상향 조정함</p>
<p>비소모품 취득단가 기준 조정으로 소모품 처리 증가 등 물품 관리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?</p>	<p>각급 기관의 물품 관리자들에 대한 기준 변경 사항 안내와 함께 낭비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음</p>

5. 토론요지

○ 없 음

6. 수정안요지

○ 없 음

7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요지

○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